

2023년도 제1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20.(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위정현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6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71건(안건번호 제2023-99068호~10173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99068호~99069호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으로,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 및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판매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에 의해 판단할 수 없어 문제된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99070호는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99071호~99085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99086호~99087호는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99088호~10173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03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6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169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제2023-169회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쪽수 기재 후 비공개함이 타당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쪽수를 기재하여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06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3-99068호~101738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99068호~99069호는 권리자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 및 '★★★'에서 제품 판매용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 중인 사안 총 2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 ♣♣♣♣♣ ♣♣♣♣♣ 중 '♣♣♣♣♣: ♣♣♣♣ ♣♣'를 판매하고 있음. 민원인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의 디지털 마케팅/IP 담당 직원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본인들의 제품 사진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판매 중이라고 주장하였음.

민원인측은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의 판매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사진 이용에만 문제를 삼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음. ♠♠♠♠♠는 그간 국내에서의 자사 제품사진 도용을 무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며, 그 첫 번째 조치로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등록하였다고 함.

(안건번호 제2023-99068호~9906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

상 게시물들은 ♠♠♠♠♠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민원인측이 제품 판매를 위해 제작한 제품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음. 민원인측은 공식 홈페이지의 약관을 통해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및 무단이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를 비롯한 소매업체들은 합법적인 계약에 의하여 민원인의 제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본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 것 또는 본인이 제작한 이미지만을 사용할 것, 또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금할 것 등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품 설명 이미지의 이용은 제품 판매만을 위한 것이며, 설령 각 판매자가 직접 제작하더라도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및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로써 제재할 성질의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안전번호 제2023-99068호~99069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용 중인 이미지의 저작물성 및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판매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에 의해 판단할 수 없으며 일응 합법적인 판매 상황에서 상세설명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권리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아까 언급한 ‘민원인은 게시자에게 본사가 제작한 이미지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약관에 있는 내용인가.
- 반하람 주임: 약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은 아님. 민원인과 게시자는 합법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에 대해 시정권고 외의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였음.
- C 위원: 민원인은 ‘♠♠♠♠♠’이고, 게시자인 ‘♣♣♣♣♣’와는 공식적인 계약 관계인 상태인데, 사진의 무단 이용을 문제삼아 신고했다는 내용인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민원인은 단순히 ‘사진 이용’ 자체에만 문제를 삼겠다고 하였음.
- C 위원: ♠♠♠♠♠ 측에서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할 때 사진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넣거나, 직접 게시자나 OSP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더 적절할 것 같음.
- A 위원: 계약 관계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도매상이 끼어 있거나 혹은 복수의 중간상들이 끼어있는 구조일 가능성도 있어 보임. 즉, 최종 판매자인 게시자와 ♠♠♠♠♠ 간의 계약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음.
- C 위원: 그렇지만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인 ‘♣♣♣♣♣’를 특정할 수 있고, 어느 도매상이나 중간상이 이 게시자에게 제품을 공

급했는지 찾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반하람 주임: 보호원 측에서는 민원을 접수하면서 도용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OSP에 직접 신고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취하는 등의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였음.
- C 위원: 가결 부결을 떠나 해당 게시물이 시정권고 심의대상이 되는지 의문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빠르게 차단하고자 하는 심의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음.
- A 위원: 제품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음.
- B 위원: 제2023-148회 심의에서 전체위원회 상정했던 SW건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인지 계약 위반의 문제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건이지만, 이번 안건은 외관상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맞는 것으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99068호~9906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99068호~99069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이용 중인 이미지의 저작물성 및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판매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에 의해 판단할 수 없으며 일응 합법적인 판매 상황에서 상세설명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권리가 직접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9907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카페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1건임.

(안전번호 제2023-9907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의 불법 번역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9907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9070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9071호~9908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 '▲▲▲▲▲' 및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0건임.
(안전번호 제2023-9907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13개의 채팅이 진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3-99081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99071호~99085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99071호~9908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9071호~99085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9086호~99087호는 민원인(익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의 불법복제물 총 2건임.
(안전번호 제2023-9908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웹하드에서 만화 '◆◆◆◆◆◆ ◆◆◆'의 1권~40권의 불법 스캔본을 판매 중임.
해당 안전번호 제2023-99086호~99087호의 2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99086호~9908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9086호~99087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99088호~10173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9397호는 웹하드에서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의 10화 전체 분량을 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6. 28.까지 애니플러스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임.
(예능 '사이렌:불의 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9520호는 웹하드에서 예능 '사이렌:불의 섬'의 1화~10화를

1,5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5. 30.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서바이벌 예능임.

(영화 '미션 임파서블:데드 레코닝 PART ON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99809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데드 레코닝 PART ONE'의 캠버전을 1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7. 12.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99088호~10173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99088호~10173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9088호~10173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99068호~99069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99070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99071호~99085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99086호~99087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99088호~10173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27.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